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선거관리규정

제·개정 연혁

* 2017년 2월 3일 제정 (이사회 의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1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라 함) 총재 선거가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맹 총재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2. 피선거권이라 함은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연맹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총재 선거를 위한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인 후보자 명부 및 선거인 명부의 작성
 2.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3.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4.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5인 ~ 7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이나 이 규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맹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고 또는 궐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없을 경우 위원 중 연장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선거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보등록일 등을 포함한 선거 일정을 선거일 21일전까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연맹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인 및 그 명부 작성 등

제6조 선거인단의 구성

- ① 선거인단은 정관 제31조에서 정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구단의 구단주가 아닌 '회원이 선임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자격을 구단의 책임자급으로 한정할 수 있다.
- ③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 확정 기준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연맹과 협회로부터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자격정지 집행중인 자
 2. 연맹과 협회로부터 제명된 자

제7조 선거인 명부 작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까지 정관 제31조에서 정한 대의원이 속한 단체에 선거인 추천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단체는 선거일 10일전까지 해당 단체의 선거인을 연맹에 통보해야 한다.
-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으로 추천된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한 기간 내에 재통보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인에서 배제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확정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작성일로부터 3일간 연맹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선거인 및 후보자는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 ③ 선거인 및 후보자는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⑤ 선거인 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된다.

제9조 선거인 대리투표 및 변경

- ① 선거인의 대리인에 의한 투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제8조 제5항에 따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후, 선거인이 선거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선거인을 교체할 수 있다.

제4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절차 등

제10조 피선거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 총재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1. 정관 제28조에 해당하는 자
 - 2. 정관 제21조 제6항에서 정한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제11조 기탁금 납부절차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연맹 명의의 금융기관의 계좌에 정관 제21조 제6항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후보자 등록 시, 그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후보자등록기간

- ① 후보자등록은 선거일 20일전부터 7일간 제13조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 ②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3조 후보자등록서류

-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
 - 2. 후보자 이력서
 - 3. 주민등록초본
 - 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5. 범죄사실 유무 증명 서류
 - 6. 기탁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7. 기타 연맹이 요구하는 서류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완비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신청을 수리한다.
- ③ 후보자는 등록과 함께 후보자의 선거 관련 업무를 대리할 대리인을 1인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접수증의 교부 및 등록 후보자 현황 공고 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게 별지 서식 4호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기간 만료 다음 날 후보자 명단을 연맹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 등록기간 만료시까지 등록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맹 이사회는 연맹 정관 제21조 제12항에 의하여 선거일 3일 전까지 총재로 추대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연맹 정관 제44조가 정한 의결방법에 따라 추천할 총재 후보자를 결정한 후 그 의결서와 추천할 총재 후보자의 '후보자 추천 승낙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등록무효

- ① 후보자 등록 후에 정관 제28조에 정한 사유가 발견된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 ②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이 무효인 사실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이 사실을 제1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선거일

선거일은 대의원 총회일로 한다.

제17조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의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8조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선거공보,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0조 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1조에서 제38조, 제61조에서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선거방법

-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투표는 선거인 1인에 1표로 한다.

제22조 투표소의 설치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 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제3항에 의해 결정된 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 ②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적고, 선거인에 해당 후보자의 총재 선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24조 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두 개의 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두 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제25조 투표 및 개표 참관인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후보자가 지정한 1인을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인의 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③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는 참관인이 될 수 없다.
- ④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2인 이상 4인 이내의 참관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6조 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 ① 선거 또는 당선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이의제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주장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경미한 정관 및 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중대한 정관 또는 규정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선거관리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 투표록의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당선자 결정 등

제28조 총재 당선인의 결정방법 및 결정

- ① 선거의 개표가 종료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제21조 제8항에 따라 총재 당선인을 결정하여 공표한다.
- ② 규정 제12조에 따른 후보등록기간 만료결과 등록된 후보자가 없더라도 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추천된 총재로 추대할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총재로 선출하며, 이 경우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당선무효

총재 당선인이 정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에라도 확인되면 그때부터 당선에 효력이 상실된다.

제30조 총재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재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총재 당선인을 연맹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 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없는 경우
2.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
3. 등록된 후보자가 없고,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추대 후보자도 없는 경우
4. 위 각항의 경우, 재선거가 실시되어 후임 총재가 취임할 때까지는 정관 제20조 제6항에 따라 현 총재가 그 직무를 계속 하여야 한다.

제32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 그 밖의 사항

- ①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② 연맹 이사회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시기, 선거인 후보자 명부 작성일, 총재 선거 공고일, 선거인 명부 작성일, 선거인 명부의 열람기간, 총재의 결격사유 게시일 등 선거 일정 기간 및 선거 관련 판단 기준일을 단축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 고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 제 ___대 총재 선거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총재 후보자 등록기간

20__년 __월 __일 __시부터 20__년 __월 __일 __시까지

2. 총재 후보자 등록마감현황 공고

20__년 __월 __일 __시

3. 총재 선거일시

일시 : 20__년 __월 __일 __시

장소 :

20__년 __월 __일

(사)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000

총재 후보자 등록신청서

- 성 명 : _____ (한자 : _____)
- 생년월일 : ____년 __월 __일생 (주민등록번호 : _____-_____)
- 주 소 :
- 직업 및 직위 :
- 연락처 :
 - 자택 :
 - 직장 :
 - 핸드폰 :
 - 자택 :
- 이력사항 : 첨부 (여권사진 1매 포함)
- 추천사항 : 첨부 (추천서 포함)

상기 본인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 제 ____대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__년 __월 __일

입후보자 : _____ (인)

(사)한국프로축구연맹 귀중

제 ___대 총재 선거 후보자 접수대장

□ 후보자

- 성 명 : _____
- 생년월일 : ___년 ___월 ___일생 (주민등록번호 : _____-_____)
- 주 소 :
- 직업 및 직위 :
- 접수일자 : 20__년 ___월 ___일
- 접수번호 :

상기와 같이 접수 확인함.

----- 절 취 선 -----

○ 접수증

- 성 명 : _____
- 생년월일 : ___년 ___월 ___일생 (주민등록번호 : _____-_____)
- 주 소 :
- 직업 및 직위 :
- 접수일자 : 20__년 ___월 ___일
- 접수번호 :

상기인이 20__년 ___월 ___일 실시하는 (사)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__년 ___월 ___일

(사)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인)

(사)한국프로축구연맹 제__대 총재 선거 개표 결과 보고

□ 개표 결과

- 선거인수 : _____
- 기 권 : _____
- 투표자수 : _____
- 유효투표수 : _____
- 무효투표수 : _____
- 득표현황

NO	성명	득표

위와 같이 개표결과를 보고합니다.

20__년 __월 __일

감표위원 _____ (인)
감표위원 _____ (인)
감표위원 _____ (인)

(사)한국프로축구연맹 제 ___대 총재 당선인 공고

20__년 __월 __일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한
제___대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선거
당선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당선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직업 및 직위 :

20__년 __월 __일

(사)한국프로축구연맹